

오산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

제정 2025년 3월 31일 조례 제2267호

제1조(「오산시역촌동명칭변경에관한조례」의 폐지) 오산시역촌동명칭변경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제2조(「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」의 폐지)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제3조(「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)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제4조(「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)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